

6. 급여 규정

제정일 : 1997년 4월 20일
개정일 : 2018년 9월 13일
개정일 : 2022년 6월 22일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본학원 교직원의 급여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조(급여기준) 급여는 표준 생계비, 유사기관의 급여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 성과 책임의 장소에 적용하도록 직급별로 이를 정한다.

제3조(급여의 종류)

- ① 급여를 고정급여 성과급여 특수급여로 구분하여 각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고정급여 : 본봉, 직책수당
 2. 성과급여 : <삭제>, 특별상여금
 3. 특수급여 : 시간 외 근무수당, <삭제> 특수 업무수당, 직무수당, 연구수당, <삭제> 등<개정 2013.2.5.>
- ② 이 규정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본봉, 직책수당, 직무수당, 특수 업무수당을 말한다.

제4조(급여지급일)

- ① 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로하여 당월 25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삭제>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2013. 2.5.>
- ② 직원 또는 부양가족 중 출산, 질병, 재해, 기타 근로 기준병상, 비상시의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급여 지급을 청구할 때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일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휴가, 휴직, 정직 기간 중의 급여)

- ① 휴가는 제급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다음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근로 기준법 제 78조에 의한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는 평균 임금, 근로 기준법 제 38조에 규정된 휴업지급은 동법에서 정하는 기준액
 2. 출산휴직은 급여를 지급치 아니한다.
 3. 기타 휴직자는 고정급여의 100분의 80, 다만 유학 휴직자는 1년까지는 본봉 전액, 1년 초과 2년 까지는 본봉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2년을 초과시는 불지급한다.
- ③ 정직기간 중에는 고정급여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제6조(해직월의 급여) 해직시는 그달의 고정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7조(파견자의 급여)

- ① 타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교직원의 급여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 ② 해외 학술 연수파견 직원에 대한 파견기간 중의 급여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8조(경직시의 급여) 교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경직하였을 때는 경직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총장의 급여) 총장의 급여와 초임호봉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고문, 촉탁의 급여) 고문과 촉탁의 급여는 그때마다 이사장이 이를 정하며 월봉 또는 연봉으로 한다.

제2장 급여금

제1절 고정급여와 성과급여

제11조(본봉)

- ① 본봉이라 함은 연공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 ② 일반직, 교원직 및 기능, 사무직의 본봉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직책수당)

- ①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책에 따라 정한다.
- ② 일반직, 교원직 및 기능 사무직의 직책수당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수습기간 중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초임호봉) 신규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의 초임호봉은 따로 이사장이 정하는 초임봉 사정 요령에 의한다.

제14조(특별상여금) <개정 2018.3.1.>

- ① 특별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교직원중** 휴직자, 정직자, 사고 및 사무형편상 대기자(정년대기자 제외)를 제외한 근무 교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2.5.>
- ② <삭제> <삭제 2018.3.1.>
- ③ 특별상여금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 ④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8.3.1.>
- ⑤ 정직처분을 당한 자는 정직기간 동안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간외 근무수당)

- ① 특별한 사유발생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시간외 근무는 이사장이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연장 근무한 시간 × 시급 × 1.5배로 지급한다.

<개정 2018.3.1.>

④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익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6조(특수업무수당)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직무수당) 총장 및 보직교원에게는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직무수당액은 따로 이사장이 정하는 사정요령에 의한다.

제18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교직원에게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에서 1인당 월 30,000원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가 타근무처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그 부양가족은 제외한다.<개정 2013.2.5.>

②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20세 미만의 자녀 2인
3. 교직원의 60세 이상의 부와 55세 이상의 모

제19조(연구수당) 교수업무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따로 이사장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1. 연구비 지원기준<본조 신설 2015.3.1.>

논문 혹은 저작의 종류 구분	지원금 규모
국내한국연구재단등재 학술지 논문 기재	1편당 150만원 및 기재비
국내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논문 기재	1편당 150만원 및 기재비
본 대학교 출판부 저서 출판	1권당 50만원
국내 일반 출판사 전공 관련 저서 출판	1권당 50만원
국내 저명 출판사 전공 관련 저서 출판	1권당 100만원
해외 일반 출판사 전공 관련 저서 출판	1권당 150만원
해외 저명학술지 논문 기재 ¹⁾	1편당 200만원 및 기재비
해외 저명 출판사 전공 관련 저서 출판	1권당 300만원

1) 해외 저명 학술지는 다음의 색인 목록들에 등재된 출판물들 및 동일 수준의 학술지와 등재지를 기준한다: ATLA Religion Database, British Library and Library of Congress Cataloguing-in-Publication Data; The British Library; the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in-Publication Data, USA; Die Deutsche Nationalbibliografie; Arts & Humanities Index; The International Bibliography of Periodical Literature; The International Bibliography of Book Reviews; Internationale Zeitschriftenshau für Bibelwissenschaft und Grenzgebiete; Linguistics and Language Behavior Abstracts; Magazines for Libraries; New Testament Abstracts; Religious and Theological Abstracts; Religion Index One Periodicals, published by the Americ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Religious Periodical Index; Religious and Theological Abstracts; Revue d'Histoire Ecclesiastique; Social Services Abstracts;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ociological Abstracts; Schrifternhaltssdienst-Theologie, and Bulletin signaletique Histoire et sciences des religions.

단, 한 사람이 1년에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2. 학술활동비 지원기준 <본조 신설 2015.3.1.>

학술 활동 종류 구분	지원 규모
국내외 학술단체 정회원 가입	정회원 가입비 및 년회비
국내 학술대회 논문 발표	지방일 경우 교통비 10만원
국내 학술대회 좌장 및 논찬	지방일 경우 교통비 10만원
국내 학술대회 단순참여	지방일 경우 교통비 10만원
해외전문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항공료 (유럽 북미: 150만원/ 아시아 50만원)
해외전문국제학술대회 좌장 또는 논찬	항공료 (유럽 북미: 150만원/ 아시아 50만원)
국내 신학대학 초청 강연	격려비 20만원

단, 한 사람이 1년에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20조(퇴직급여금) <삭제><본조삭제 2013.2.5.>

제21조(각종수당의 지급) <본조신설 2018.9.13.>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각각 지급한다.

1. 연간 2회 명절 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
2. 교직원의 생일 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생일 선물을 지급한다.
3. 특별 강의·강연, 입시 지원 등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별근무수당 또는 강의료를 지급한다.

제22조(중식제공) <본조신설 2018.9.13.><개정 2022.6.22.>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비를 제공한다.

부 칙(1997. 9.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5.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13.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행한 일련의 행정행위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22. 6. 22.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수당의 지급기준 <신설 2018. 9. 13.>

각종수당의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또는 지급액	비 고
1. 명절(연2회)	○ 100,000원 상당하는 상품권	
2. 생일	○ 100,000원 상당하는 상품권	